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3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최혁진·박성준·정혜경
윤종오·조계원·민형배
전종덕·김문수·박민규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5(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u> <u>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u> <u>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고용</u> <u>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u> <u>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u> <u>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u> <u>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 <u>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u> <u>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u> <u>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u> <u>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u> <u>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u> <u>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u> <u>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u> <u>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u>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u> <u>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u> <u>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u> <u>력하여야 한다.</u>